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07호 2014. 1.27.(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83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 17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95호 2014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 28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98호 공시송달 공고 ----- 42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104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4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5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10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111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  
공고 ----- 81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1.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28외 5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1-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원창동 381-73	북항로32번안길 28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원창동 381-66	북항로32번안길 27	2013.12.02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원창동 381-77	북항로 20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4	인천 서구 연희동 789-15, 789-16	담지로8번길 10	2011.02.14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	
5	인천 서구 석남동 488-7	서달로 111	2009.06.30	건지촌 뒷산의 옛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에서 유래	
6	인천 서구 검암동 678-8(101동)	도요지로202번길 6-6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검암동 678-8(102동)	도요지로 196	2009.08.28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8	인천 서구 검암동 678-9	도요지로202번길 6-4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검암동 678-1	도요지로190번길 1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검암동 678-6(101동)	도요지로202번길 6-10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검암동 678-9(102동)	도요지로 194	2009.08.28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12	인천 서구 검암동 678-7(101동)	도요지로202번길 6-8	2009.08.28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검암동 678-7(102동)	도요지로 196-1	2009.08.28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14	인천 서구 원창동 390-22	북항로 76-32	2009.08.28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15	인천 서구 석남동 650-91	건지로95번길 35	2009.08.28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 서구 검암동 652-6	승학로402번길 33-4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 서구 검암동 657-4	승학로402번길 15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 서구 오류동 1469-7	약암로 13	2009.07.01	인근에 약암온천이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19	인천 서구 왕길동 172-1	봉수대로1394번길 39	2009.07.01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44블럭 9로트	가현로 70	2008.11.2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1	인천 서구 오류동 1525-2	검단천로 155	2009.08.28	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1-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22	인천 서구 금곡동 645-5	향동로 38	2009.08.28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향동로라 명명	
23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4블럭 2-1로트	마전로99번길 14	2008.11.2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4블럭 2-2로트	검단로623번길 28	2008.11.2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4블럭 2-3로트	검단로623번길 26	2008.11.2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38블럭 8로트	검단로768번길 26	2008.11.2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 서구 금곡동 281-9	봉수대로 1571	2009.07.01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을 반영	
28	인천 서구 왕길동 669-1, 669-3	완정로117번길 29	2008.11.2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 60블럭 1로트	단봉로 139	2009.08.28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30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6-20,-21블럭	보듬3로 11	2012.10.19	보듬로에서 세번째 분기되는 도로	
31	인천 서구 오류동 486-4	오류로 15	2009.08.28	오류동 내 오류역사를 경유하는 도로	
32	인천 서구 오류동 434-154	원당대로 227-10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33	인천 서구 오류동 667-1	봉화로85번길 19	2009.08.28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인천 서구 당하동 717	드림로 548	2009.07.12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35	인천 서구 오류동 632-2	단봉로128번길 17	2009.08.28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인천 서구 오류동 634-2	단봉로128번길 19	2009.08.28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인천 서구 오류동 644-2	단봉로128번길 23	2009.08.28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인천 서구 오류동 1539-5	약암로 15	2009.07.01	인근에 약암온천이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39	인천 서구 불로동 707-1	서곶로 908	2009.08.28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40	인천 서구 경서동 730-16	경서로55번길 6-1	2009.08.28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1.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서달로 111외 7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1-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488-7	서달로 111	2014.01.24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연희동 689-31	승학로 298	2014.01.24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석남동 223-260	건지로97번길 14	2014.01.24	건축물 멸실	
4	인천 서구 검암동 678-1	도요지로190번길 1	2014.01.24	건축물 멸실	
5	인천 서구 가좌동 452-3	여우재로 7	2014.01.24	건축물 멸실	
6	인천 서구 석남동 223-265	건지로109번길 9	2014.01.24	건축물 멸실	
7	마전동 마전지구 14블럭 1로트	마전로99번길 16	2014.01.17	건축물 멸실	
8	마전동 마전지구 14블럭 2-2, 2-3로트	검단로623번길 26	2014.01.17	건축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3호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17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사유

-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이후 2차 붕괴 우려 시설물을 평가하고, 등급(위험, 사용가능, 사용제한, 출입통제)을 나누어 위험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만일의 2차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함.

#### 2. 주요내용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제1, 2조)
-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제3, 4조)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제5조)
-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제6, 7조)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제8조)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제9조)
-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제10, 11조)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 등(제12조)

###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3항
- 조례 표준(안):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3077호(2011)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404-83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안전관리과
- 전화 : 032-560-4703
- FAX : 032-560-273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진홍
- 전 화 : 032-560-4703
- 이메일 : rc292jh@korea.kr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서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서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서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

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서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구성·운영)**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한다) 직  
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서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 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⑥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서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서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서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

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 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서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서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 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 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 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 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5항 관련)

&lt; 앞 &gt;

<b>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b>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임을 증명함.	
<b>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b>	

120mm×90mm

&lt; 뒤 &gt;

<p>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b>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b></p>
--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제한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사용가능 표지(제7조제3항 관련)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표지(제7조제4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mm×297mm [별지 제1호 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14 - 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조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국 지자체에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2. 입법 예고기간 : **2014.01.17 ~ 2.06 (20일간)**
3.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재난발생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안 제3조)
- 단계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 명문화
- 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
- 라. “통합지휘소의 장(부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8조~안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재난현장 상황통보, 재난지역 주민 대피
  - 재난현장 출동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 재난현장 조치 :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과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 바.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안 제22조)
- 사.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안 제23조)

## 5. 의견제출

입법예고 : 2014년01월17일~ 02월06일 (20일간)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2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404-833/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안전관리과  
(전화 032-560-4703 팩스 032-560-2735)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진홍(전화 032-560-47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

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서 정한 재난종합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종합상

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 - 95호

## 2014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 2. 명예(조기)퇴직 신청

####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제외)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제외)

나. 신청기간 : 홀수 달(1, 3, 5, 7, 11월) 1일 ~ 15일 까지

(※ 부득이한 경우 수시신청 가능)

####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⑥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⑦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⑧ 그 외 ①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함.

##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부족 사에는 예산 확보 후)

##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자가 지급 받은 경우

## 8. 수당 산정방법

### ○ 명예 퇴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left[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right]$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

### < 월 봉급액 산출예시 >

#### ☞ 호봉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예) 봉급표상 봉급액 × 68%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78%×68.54%×1/2 = [(연봉액-성과연봉) / 12×78%×68.54%×1/2]

예) 연봉월액 × 78% × 68.54%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지급

※ (단,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 10. 제출서식

- ① (수시)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수시)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자필 사직원 1부
-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앞 쪽)

<b>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b>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 공무원 구분						
	⑤ 성명 한 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div>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 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작성 및 확인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2014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span> <span>직급</span> <span>성명</span> <span>(인)</span> </div>				

##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2. 퇴직사유 :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14.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4.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4.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 사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위 본인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코자 하오니 처리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98호

##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고기간 : 2014 01. 27. ~ 2014. 02. 11.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송달지주소	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장**	서울 양천구	경서로55번길 6-1	경서로55번길 10-4	2014.01.10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박**	서울 중랑구	경서로55번길 6-1	경서로55번길 10-4	2014.01.10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심*	인천 서구	경서로55번길 6-1	경서로55번길 10-4	2014.01.10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정**	인천 서구	경서로55번길 6-1	경서로55번길 10-4	2014.01.10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이**	인천 서구	경서로55번길 6-1	경서로55번길 10-4	2014.01.10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4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용 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1매당) : 60원</li> <li>○ A4라벨용지(1매당) :2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제공 = (560원×CD개수)+(25원×면수)</li> </ul>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례안 제2조)
  - 862명 ⇒ 877명 (증 15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조례안 별표 3)
  - 일반직 : 858명 ⇒ 873명(증 15명)
  - 5급 : 53명 ⇒ 55명(증 2명)
  - 6급이하 : 799명 ⇒ 812명(증 13명)

##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규칙안 별표)

- 본 청 : 555명 ⇒ 567명(증 12명)
- 출장소 : 43명 ⇒ 44명(증 1명)
- 동 : 185명 ⇒ 187명(증 2명)

※ 추가소요 인건비 : 945,534천원 (내역 별첨)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62”를 “877”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44”를 “859”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87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73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5	26	2	6	1	20
6급 이하 계	81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3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b>862</b>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b>844</b>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p> <p>[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 기구</th> <th>직속 기관</th> <th>출장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b>862</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b>1</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청장</td><td><b>1</b></td><td><b>1</b></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b>858</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b>1</b></td><td><b>1</b></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b>5</b></td><td><b>3</b></td><td><b>1</b></td><td><b>1</b></td><td></td><td></td></tr> <tr><td>5급</td><td><b>53</b></td><td><b>24</b></td><td><b>2</b></td><td><b>6</b></td><td><b>1</b></td><td><b>20</b></td></tr> <tr><td>6급 이하 계</td><td><b>799</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3</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급 상당</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 상당이하계</td><td>3</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862</b>			-			정무직 계	<b>1</b>			-			구청장	<b>1</b>	<b>1</b>					일반직 계	<b>858</b>			-			3급	<b>1</b>	<b>1</b>					4급	<b>5</b>	<b>3</b>	<b>1</b>	<b>1</b>			5급	<b>53</b>	<b>24</b>	<b>2</b>	<b>6</b>	<b>1</b>	<b>20</b>	6급 이하 계	<b>799</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0						6급 상당이하계	3			-			<p>제2조(정원의 총수) ----- ----- ----- <b>877</b> ----- -----.</p> <p>1. -----: <b>859</b>--- 2. -----</p> <p>[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 기구</th> <th>직속 기관</th> <th>출장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b>877</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b>1</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청장</td><td><b>1</b></td><td><b>1</b></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b>873</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b>1</b></td><td><b>1</b></td><td></td><td></td><td></td><td></td></tr> <tr><td>4급</td><td><b>5</b></td><td><b>3</b></td><td><b>1</b></td><td><b>1</b></td><td></td><td></td></tr> <tr><td>5급</td><td><b>55</b></td><td><b>26</b></td><td><b>2</b></td><td><b>6</b></td><td><b>1</b></td><td><b>20</b></td></tr> <tr><td>6급 이하 계</td><td><b>812</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3</td><td></td><td></td><td>-</td><td></td><td></td></tr> <tr><td>5급 상당</td><td>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6급 상당이하계</td><td>3</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877</b>			-			정무직 계	<b>1</b>			-			구청장	<b>1</b>	<b>1</b>					일반직 계	<b>873</b>			-			3급	<b>1</b>	<b>1</b>					4급	<b>5</b>	<b>3</b>	<b>1</b>	<b>1</b>			5급	<b>55</b>	<b>26</b>	<b>2</b>	<b>6</b>	<b>1</b>	<b>20</b>	6급 이하 계	<b>812</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0						6급 상당이하계	3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862</b>			-																																																																																																																																																																					
정무직 계	<b>1</b>			-																																																																																																																																																																					
구청장	<b>1</b>	<b>1</b>																																																																																																																																																																							
일반직 계	<b>858</b>			-																																																																																																																																																																					
3급	<b>1</b>	<b>1</b>																																																																																																																																																																							
4급	<b>5</b>	<b>3</b>	<b>1</b>	<b>1</b>																																																																																																																																																																					
5급	<b>53</b>	<b>24</b>	<b>2</b>	<b>6</b>	<b>1</b>	<b>20</b>																																																																																																																																																																			
6급 이하 계	<b>799</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0																																																																																																																																																																								
6급 상당이하계	3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 계	<b>877</b>			-																																																																																																																																																																					
정무직 계	<b>1</b>			-																																																																																																																																																																					
구청장	<b>1</b>	<b>1</b>																																																																																																																																																																							
일반직 계	<b>873</b>			-																																																																																																																																																																					
3급	<b>1</b>	<b>1</b>																																																																																																																																																																							
4급	<b>5</b>	<b>3</b>	<b>1</b>	<b>1</b>																																																																																																																																																																					
5급	<b>55</b>	<b>26</b>	<b>2</b>	<b>6</b>	<b>1</b>	<b>20</b>																																																																																																																																																																			
6급 이하 계	<b>812</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0																																																																																																																																																																								
6급 상당이하계	3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 건 지 소	출장소	동
총 계		877	567	18	45	16	44	187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73	563	18	45	16	44	187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5	26	2	5	1	1	20
지방행정사무관		32	15	2				15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3	2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95	151	3	9	3	8	21
지방행정주사		93	71	3			1	18
지방세무주사		6	6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6	6					
지방공업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3			3			
지방환경주사	5	5					
지방시설주사	18	16				2	
지방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농림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지방운전주사	4	3					1
지방사무운영주사	2	2					
<b>7급 소계</b>	<b>294</b>	<b>191</b>	<b>7</b>	<b>15</b>	<b>6</b>	<b>21</b>	<b>54</b>
지방행정주사보	101	60	3			1	37
지방세무주사보	29	23				6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3	19					4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5	5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5	9		4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6			5	1		
지방환경주사보	9	9					
지방시설주사보	36	31				5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행정·농업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1	0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18	4	1	1		1	11
지방사무운영주사보	9	5	1			2	1
지방속기주사보	2		2				
<b>8급 소계</b>	<b>256</b>	<b>160</b>	<b>4</b>	<b>14</b>	<b>5</b>	<b>13</b>	<b>60</b>
지방행정서기	108	69	2	1			36
지방세무서기	12	9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28	14					14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3	3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1	7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2			1	1		
지방간호서기	7			4	3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1	25				6	
지방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13	2	1	1		1	8
지방사무운영서기	3	1	1	1		0	
<b>9급 소계</b>	<b>67</b>	<b>31</b>	<b>1</b>	<b>1</b>	<b>1</b>	<b>1</b>	<b>32</b>
지방행정서기보	33	11	1				21
지방세무서기보	3	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8	6		1			11
지방공업서기보	0	0					
지방농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5	5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지방운전서기보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3	3				0	
<b>별정직 계</b>	<b>3</b>	<b>3</b>	<b>0</b>	<b>0</b>	<b>0</b>	<b>0</b>	<b>0</b>
5급상당 소계	0	0	0			0	0
일반비서	0	0					
6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 소	보건 지소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 소	보건 지소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 소	보건 지소	출장 소	동										
총 계	<b>862</b>	<b>555</b>	18	45	16	<b>43</b>	<b>185</b>	총 계	<b>877</b>	<b>567</b>	18	45	16	<b>44</b>	<b>187</b>																
일반직 계	<b>858</b>	<b>551</b>	18	45	16	<b>43</b>	<b>185</b>	일반직 계	<b>873</b>	<b>563</b>	18	45	16	<b>44</b>	<b>187</b>																
5급 소계	<b>53</b>	<b>24</b>	2	5	1	1	20	5급 소계	<b>55</b>	<b>26</b>	2	5	1	1	20																
행정	<b>30</b>	<b>13</b>	2				15	행정	<b>32</b>	<b>15</b>	2				15																
6급 소계	<b>182</b>	<b>140</b>	3	<b>8</b>	3	8	<b>20</b>	6급 소계	<b>195</b>	<b>151</b>	3	<b>9</b>	3	8	<b>21</b>																
행정	<b>87</b>	<b>65</b>	3			1	18	행정	<b>93</b>	<b>71</b>	3			1	18																
세무	<b>5</b>	<b>5</b>						세무	<b>6</b>	<b>6</b>																					
공업	<b>4</b>	<b>4</b>						공업	<b>5</b>	<b>5</b>																					
간호	<b>2</b>			<b>2</b>				간호	<b>3</b>			<b>3</b>																			
시설	<b>15</b>	<b>13</b>				2		시설	<b>18</b>	<b>16</b>				2																	
운전	<b>3</b>	3						운전	<b>4</b>	3					<b>1</b>																
7급 소계	<b>285</b>	<b>185</b>	7	15	6	<b>20</b>	<b>52</b>	7급 소계	<b>294</b>	<b>191</b>	7	15	6	<b>21</b>	<b>54</b>																
세무	<b>27</b>	<b>22</b>				<b>5</b>		세무	<b>29</b>	<b>23</b>				<b>6</b>																	
사회복지	<b>18</b>	<b>15</b>					<b>3</b>	사회복지	<b>23</b>	<b>19</b>					<b>4</b>																
녹지	<b>4</b>	<b>4</b>						녹지	<b>5</b>	<b>5</b>																					
방송통신	<b>2</b>	<b>2</b>						방송통신	<b>3</b>	<b>3</b>																					
운전	18	<b>5</b>	1	1		1	<b>10</b>	운전	18	<b>4</b>	1	1		1	<b>11</b>																
8급 소계	<b>257</b>	<b>161</b>	4	<b>15</b>	5	13	<b>59</b>	8급 소계	<b>256</b>	<b>160</b>	4	<b>14</b>	5	13	<b>60</b>																
행정	<b>110</b>	<b>72</b>	2	1			<b>35</b>	행정	<b>108</b>	<b>69</b>	2	1			<b>36</b>																
세무	<b>11</b>	<b>8</b>				3		세무	<b>12</b>	<b>9</b>				3																	
사회복지	<b>25</b>	<b>11</b>					14	사회복지	<b>28</b>	<b>14</b>					14																
녹지	<b>4</b>	<b>4</b>						녹지	<b>3</b>	<b>3</b>																					
간호	<b>8</b>			<b>5</b>	3			간호	<b>7</b>			<b>4</b>	3																		
시설	<b>32</b>	<b>26</b>				6		시설	<b>31</b>	<b>25</b>				6																	
9급 소계	<b>75</b>	<b>37</b>	1	1	1	1	<b>34</b>	9급 소계	<b>67</b>	<b>31</b>	1	1	1	1	<b>32</b>																
행정	<b>39</b>	<b>16</b>	1				<b>22</b>	행정	<b>33</b>	<b>11</b>	1				<b>21</b>																
사회복지	<b>16</b>	<b>4</b>		1			11	사회복지	<b>18</b>	<b>6</b>		1			11																
공업	<b>1</b>	<b>1</b>						공업	<b>0</b>	<b>0</b>																					
시설	<b>6</b>	<b>6</b>						시설	<b>5</b>	<b>5</b>																					
운전	<b>2</b>	<b>1</b>					<b>1</b>	운전	<b>0</b>	<b>0</b>					<b>0</b>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0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인구 50만명 도래 대비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홍보미디어과와 세무1과·세무2과를 신설
- 일부기구를 수행업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 기획홍보실 ⇒ 기획홍보실, 홍보미디어과,
  - 세 무 과 ⇒ 세무1과, 세무2과
- 명칭변경
  - 기획홍보실 ⇒ 기획예산실
  -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을 “(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본청”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 세무과”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3호부터 제8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84.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85.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86.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87.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88.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89. 전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연구등”을 “연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주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원격지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3의 성과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4의 성과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인천광역시 서구----- ----- ----- ----- -----.</p>
<p>제2조(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구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과·소·동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실장·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을 둔다.</p>	<p>제3조(실·국의 설치) ----- ----- ---- <u>기획예산실</u>----- ----- -----.</p>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 12. (생략)
- 13. 전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14. ~ 17. (생략)
- 18.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19.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 20.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 21. 자유수호 주민제도
- 22.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 23.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 24.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25.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82. (생략)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

- 1. ~ 12. (현행과 같음)
- 11. <삭제>
- 14. ~ 17. (현행과 같음)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제6조(총무국) ① -----  
-----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  
-----  
-----.

② -----  
-----.

- 1. ~ 82. (현행과 같음)
- 8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84.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 85.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 86.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건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검단지역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다음

한 업무

87. 구보(구정신문) 발간·배부

88.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89. 전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복지국) ① -----  
-----  
-----  
----- 자원순환과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관리국) ① -----  
-----  
-----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소관사무) -----  
----- 따라 -----

과 같은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 13. (생략)

14.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 4 장 사 업 소

제15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 와 같다.

제19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  
연구 등-----  
-----

제15조(설치)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원격지 주민-----  
-----  
-----.

② 제1항에 따라 -----  
-----  
-----.

제18조(설치) ① -----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  
-----.

제19조(직무) -----  
-----  
-----  
----- 운영 등 -----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장, 세무과장”을 “홍보미디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부서(기관)란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교통행정과”를 “주차관리과”로 하며, 인재육성과 다음에 “홍보미디어과”를 삽입하고, “세무과” 삭제하고,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삽입하며, 분장사무란 중 기획홍보실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홍보미디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 구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p><b>1. ~ 101. (현행과 같음)</b></p> <p><b>102.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삭제)</b></p> <p><b>103. 행정 전산화 시설 운영, 유지관리(전산장비, PC) (삭제)</b></p> <p><b>104.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파일서버 운영관리 (삭제)</b></p> <p><b>105.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삭제)</b></p> <p><b>106.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교육 및 점검 (삭제)</b></p> <p><b>107. 네트워크 운영관리 (삭제)</b></p> <p><b>108. (현행과 같음)</b></p> <p><b>109.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 (삭제)</b></p> <p><b>110. 전산교육(직원 및 구민대상) (삭제)</b></p> <p><b>111. 그룹웨어 운영 관리 (삭제)</b></p> <p><b>11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삭제)</b></p> <p><b>113. 인터넷 웹 서버 운영 관리 (삭제)</b></p> <p><b>114.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관리 (삭제)</b></p> <p><b>115.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삭제)</b></p> <p><b>116. 기타 전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b></p> <p><b>117. ~ 121. (현행과 같음)</b></p> <p><b>12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삭제)</b></p> <p><b>123.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삭제)</b></p> <p><b>124.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삭제)</b></p> <p><b>125. 자유수호 주민제도 (삭제)</b></p> <p><b>126.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삭제)</b></p> <p><b>127.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삭제)</b></p> <p><b>128.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삭제)</b></p> <p><b>129.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삭제)</b></p> <p><b>130. ~ 132. (현행과 같음)</b></p>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신설)</li> <li>2.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신설)</li> <li>3.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신설)</li> <li>4.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신설)</li> <li>5. 구보(구정신문) 발간·배부 (신설)</li> <li>6.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신설)</li> <li>7.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신설)</li> <li>8. 행정 전산화 시설 운영, 유지관리(전산장비, PC) (신설)</li> <li>9.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파일서버 운영관리 (신설)</li> <li>10.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신설)</li> <li>11.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교육 및 점검 (신설)</li> <li>12. 네트워크 운영관리 (신설)</li> <li>13.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 (신설)</li> <li>14. 전산교육(직원 및 구민대상) (신설)</li> <li>15. 그룹웨어 운영 관리 (신설)</li> <li>1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신설)</li> <li>17. 인터넷 웹 서버 운영 관리 (신설)</li> <li>18.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신설)</li> <li>19.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신설)</li> <li>20. 기타 전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li> </ol>
세 무 1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신설)</li> <li>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총괄 (신설)</li> <li>3.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총괄 (신설)</li> <li>4. 지방세 운영평가 총괄 (신설)</li> <li>5.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신설)</li> <li>6. 지방세의 수납, 집계 및 결산 (신설)</li> <li>7. 지방세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신설)</li> <li>8. 지방세 위원회 운영 (신설)</li> <li>9. 과오납 조정 및 환불 (신설)</li> <li>10. 채권관리 및 보고 (신설)</li> <li>11. 구금고 계약과 구금고 및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신설)</li> <li>12. 구 자금 관리 (신설)</li> <li>13.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 (신설)</li> <li>14.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 (신설)</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조정 (신설)</li> <li>16.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li> <li>17. 세외수입 수납, 집계 및 결산 (신설)</li> <li>18.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신설)</li> <li>19. 세외수입 체납관리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 보고 (신설)</li> <li>20.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압류 (신설)</li> <li>21. 재산세 부과 및 독촉고지 (신설)</li> <li>22. 제21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설)</li> <li>23. 제21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신설)</li> <li>24.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신설)</li> <li>25.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li> <li>26. 지방세 체납처분 및 체납자 관리 (신설)</li> <li>27.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 촉탁서 처리 (신설)</li> <li>28.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가산금 조정 (신설)</li> <li>29. 관허사업 제한 (신설)</li> </ul>
세 무 2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행 총괄 (신설)</li> <li>2. 자동차세, 취득·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고지 (신설)</li> <li>3. 제2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설)</li> <li>4. 제2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신설)</li> <li>5.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 및 독촉고지 (신설)</li> <li>6. 제5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설)</li> <li>7. 제5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신설)</li> <li>8.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신설)</li> <li>9.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 (신설)</li> <li>10.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신설)</li> <li>11.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운영평가 (신설)</li> <li>12.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세정자료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신설)</li> <li>13. 개별주택 가격 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설)</li> <li>14. 개별주택 가격 공시 (신설)</li> <li>15. 공동주택 가격조사관련 업무 (신설)</li> </u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민원봉사과	<p><b>1. ~ 30. (현행과 같음)</b></p> <p><b>31.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b></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신설)</p> <p>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신설)</p> <p>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신설)</p> <p>카. 환지에정지증명원 발급 (신설)</p> <p>타.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신설)</p> <p>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신설)</p> <p>하. 건축물대장 발급 (신설)</p> <p><b>32. ~ 42. (현행과 같음)</b></p>
토지정보과	<p><b>1. ~ 30. (현행과 같음)</b></p> <p><b>56.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b></p> <p>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삭제)</p> <p>나.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삭제)</p> <p>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삭제)</p> <p>라. 환지에정지증명원 발급 (삭제)</p> <p>마.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삭제)</p> <p>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삭제)</p> <p>사. 건축물대장 발급 (삭제)</p> <p><b>57. ~ 126. (현행과 같음)</b></p>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항, 제10조 본문,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같은 항 제6호, 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제2항, 제32조 본문, 제33조 본문, 제34조제2항, 제35조 본문 및 제42조 본문 중 “기획

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3호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2 제1항,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9조 본문,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제70조 제4항, 제74

조 제4항, 제93조 본문 및 제120조제1항,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각각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청소행정담당”을 각각 “자원순환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각각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u>기획홍보실</u>) (생략)</p> <p>제4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재육성과장, <u>재무과장</u>, <u>세무과장</u>, 민원봉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일자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3조(<u>기획예산실</u>) (현행과 같음)</p> <p>제4조(총무국) ----- ----- ----- <u>홍보미디어과장</u>, <u>재무과장</u>, <u>세무1과장</u>, <u>세무2과장</u>----- ----- ----- ----- ----- ----- ----- ----- -----</p>
<p>제5조(문화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u>청소행정과장</u>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5조(문화복지국) ----- ----- ----- ----- <u>자원순환과장</u>----- ----- ----- ----- ----- ----- ----- ----- -----</p>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기관)	분장사무	부서(기관)	분장사무
기획홍보실	1. ~ 101. (생략)	기획예산실	1. ~ 101. (현행과 같음)
	102. 행정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2. <삭제>
	103. 행정 전산화 시설 운영, 유지 관리(전산장비, PC)		103. <삭제>
	104.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파일서버 운영관리		104. <삭제>
	105.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105. <삭제>
	106.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전산보안 교육 및 점검		106. <삭제>
	107. 네트워크 운영관리		107. <삭제>
	108. (생략)		108. (현행과 같음)
	109.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 지 관리		109. <삭제>
	110. 전산교육(직원 및 구민대상)		110. <삭제>
	111. 그룹웨어 운영 관리		111. <삭제>
	11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112. <삭제>
	113. 인터넷 웹 서버 운영 관리		113. <삭제>
	114.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관리		114. <삭제>
	115.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15. <삭제>
	116. 기타 전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6. <삭제>
	117. ~ 121. (생략)		117. ~ 121. (현행과 같음)
	12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122. <삭제>
	123.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123. <삭제>
	124.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124. <삭제>
125. 자유수호 주민계도	125. <삭제>		
126.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126. <삭제>		
127.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127. <삭제>		
128.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28. <삭제>		
129.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129. <삭제>		
130. ~ 132. (생략)	130. ~ 13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신 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신 설>		2. 지방세 목표액의 책정 및 징수 전망 분석 총괄
	<신 설>		3.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총괄
	<신 설>		4. 지방세 운영평가 총괄
	<신 설>		5.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신 설>		6. 지방세의 수납, 집계 및 결산
	<신 설>		7. 지방세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 관리
	<신 설>		8. 지방세 위원회 운영
	<신 설>		9. 과오납 조정 및 환불
	<신 설>		10. 채권관리 및 보고
	<신 설>		11. 구금고 계약과 구금고 및 수납 기관의 지도감독
	<신 설>		12. 구 자금 관리
<신 설>	<신 설>	세무1과	13.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
	<신 설>		14.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
	<신 설>		15.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
	<신 설>		16.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세외수입 수납, 집계 및 결산
	<신 설>		18.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신 설>		19. 세외수입 체납관리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 보고
	<신 설>		20.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압류
	<신 설>		21. 재산세 부과 및 독촉고지
	<신 설>		22. 제21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 설>		23. 제21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신 설>		24.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현 행		개 정 안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신 설>		25.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신 설>		26. 지방세 체납처분 및 체납자 관리
	<신 설>		27.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 촉탁서 처리
	<신 설>		28.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가산금 조정
	<신 설>		29. 관허사업 제한
	<신 설>		1.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행 총괄
	<신 설>		2. 자동차세, 취득·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고지
	<신 설>		3. 제2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 설>		4. 제2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신 설>		5.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 및 독촉고지
	<신 설>		6. 제5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신 설>		7. 제5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신 설>	<신 설>	세무2과	8.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신 설>		9.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
	<신 설>		10.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신 설>		11.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운영평가
	<신 설>		12.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세정자료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제
	<신 설>		13. 개별주택 가격 시가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신 설>		14. 개별주택 가격 공시
	<신 설>		15. 공동주택 가격조사관련 업무

현행		개정안	
부서(기관)	분장사무	부서(기관)	분장사무
민원봉사과	1. ~ 30. (생략) 31.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사.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2. ~ 42. (생략)	민원봉사과	1. ~ 30. (생략) 31.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자.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카. 환지예정증명원 발급 타.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하. 건축물대장 발급 32. ~ 42. (현행과 같음)
청소행정과	1. ~ 44. (생략)	자원순환과	1. ~ 44. (현행과 같음)
토지정보과	1. ~ 55. (생략) 56.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나.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라. 환지예정증명원 발급 마.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사. 건축물대장 발급 57. ~ 126. (생략)	토지정보과	1. ~ 55. (현행과 같음) 56.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57. ~ 126. (현행과 같음)
교통행정과	1. ~ 27. (생략)	주차관리과	1. ~ 27.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1호

##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공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7.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융자계획

- 가. 융자금 총액 : 784백만원 이내
- 나. 융자금 용도 :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 다.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융자금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 라. 대출한도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실비용)
-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서구청 지점
-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 사. 대출금리 : 년 7%(자부담 2%, 구지원 5%)
- 아. 자격요건 : 2014년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여야 함

#### 2. 융자대상자 선정

- 가. 융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하여 융자대상자로 추천
- 나. 융자대상추천자로서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 다. 융자제외 대상 : 무허가(위법)건축물, 아파트, 공급관이 없는 지역,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 3. 용자대상 우선순위

- 가. 단독주택
- 나. 다가구주택
- 다. 다세대(연립주택)
- 라. 상가주택(주택부분)

### 4.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인천도시가스사(주)에 확인(☎570-7806)
- 나. 서구청 경제지원과, 동사무소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 다. 구비서류(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접수필증 사본 1부)
- 라.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용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 5. 기타사항

- 가.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에너지관리팀, ☎560-4463)